

2023-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채용 공고

- 별정직, 일반직, 교사직,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믿음과 소통을 바탕으로 성취하는 신(信)통(通)한(汗)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3. 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우리 공단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에는 직무능력과 무관하고 심사위원에게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청탁을 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입사지원서 작성 전에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 예정일에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2023-1차 채용 전 분야 상호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모든 채용절차는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오니 관련 안내사항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지원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야 및 지역(소속기관)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분야별 직무내용 및 능력 등의 세부 사항은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신분
직군	직급	세부분야	지역(신규임용지)		
정규직 (17명)	별정직 5급	정신보건	전국(경남)	1명	수습 직원 ↓ 정규직
	일반직 5급	건축	전국(본부)	1명	
		회계·결산	전국(본부)	1명	
	교사직 교사	정보·통신	전국	14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신분
직군	직급	세부분야	지역		
특정업무직 (8명)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서울지역본부	1	채용형 인턴 ↓ 특정업무직
			울산지사	2	
			경기북부지사	1	
			경기서부지사	2	
			전북지사	1	
			경남지사	1	

주1) 2023-1차 채용의 모든 분야는 공단 내규에 의해 전국순환근무 대상입니다.

주2) 정규직 채용분야는 수습기간 3개월, 특정업무직 채용분야는 채용형 인턴 3개월 적용(근무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임용여부 결정)

2. 자격요건

- 지원자는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통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분야별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별도 안내가 없으면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자는 공고마감일부터 임용 당일까지 공통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통 결격사유

채용분야	결격사유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인 경우(특정업무직 채용분야에 한함)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임용예정일 기준 각 직렬(채용분야)별 정년을 도과한 경우 * 교사직은 만 62세, 그 외 직렬(채용분야)은 만 60세 ○ 임용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
별정직 5급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취득자

채용분야	자격요건								
일반직 5급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건축 관련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 관련 기사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에 한함								
일반직 5급 (회계·결산)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관에서 회계 또는 결산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0인 여부는 '23년 2월 말 기준으로 판단)								
교사직 교사 (정보·통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 『교사직 교사 해당분야표』 참조 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해당분야*에서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아래 ㉠~㉢ 참조) * 해당분야: 『교사직 교사 해당분야표』 참조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해당분야: 『교사직 교사 해당분야표』 참조 ㉣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교사직 교사 해당분야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해당분야(직종)</th></tr> </thead> <tbody> <tr> <td>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별표1 [20.정보·통신]</td><td> 20-1.정보기술전략계획 20-2.정보기술개발 20-3.정보기술운영관리 20-4.유선통신구축 20-5.무선통신구축 20-6.통신서비스 20-7.방송기술 </td></tr> <tr> <td>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별표1 [15.기계]</td><td>15-4.기계조립·관리</td></tr> <tr> <td>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별표1 [19.전기·전자]</td><td> 19-5.전기자동제어 19-8.전자기기일반 19-9.전자기기개발 19-10.전자부품개발 19-11.반도체디스플레이개발 19-12.로봇개발 19-13.의료장비제조 19-14.광기술개발 19-15.3D프린터개발 </td></tr> </tbody> </table>	해당분야(직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별표1 [20.정보·통신]	20-1.정보기술전략계획 20-2.정보기술개발 20-3.정보기술운영관리 20-4.유선통신구축 20-5.무선통신구축 20-6.통신서비스 20-7.방송기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별표1 [15.기계]	15-4.기계조립·관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별표1 [19.전기·전자]	19-5.전기자동제어 19-8.전자기기일반 19-9.전자기기개발 19-10.전자부품개발 19-11.반도체디스플레이개발 19-12.로봇개발 19-13.의료장비제조 19-14.광기술개발 19-15.3D프린터개발
해당분야(직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별표1 [20.정보·통신]	20-1.정보기술전략계획 20-2.정보기술개발 20-3.정보기술운영관리 20-4.유선통신구축 20-5.무선통신구축 20-6.통신서비스 20-7.방송기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별표1 [15.기계]	15-4.기계조립·관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6호 별표1 [19.전기·전자]	19-5.전기자동제어 19-8.전자기기일반 19-9.전자기기개발 19-10.전자부품개발 19-11.반도체디스플레이개발 19-12.로봇개발 19-13.의료장비제조 19-14.광기술개발 19-15.3D프린터개발								

채용분야		자격요건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원	서울지역본부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 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공인노무사
	울산지사	
	경북북부지사	
	경기서부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3. 근로조건 등

구분	고용형태 및 기간	근무형태 및 보수
별정직, 일반직, 교사직	수습직원(3개월) → 정규직	주 40시간(5일), 1일 8시간(9시~18시) (수습기간)해당 직급의 1등급 급여 (정식임용)개인별 초임 등급 확정 예정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채용형 인턴(3개월) → 특정업무직	주 40시간(5일), 1일 8시간(9시~18시) (인턴기간)월 2,220,590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정식임용)해당 직렬 1등급 1단계 급여

4. 전형상세

- 분야별 공통사항 및 고유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단계는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 시를 제외하고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 분야 공통

- (채용 공고기간) 2023. 3. 13.(월) ~ 3. 28.(화) 11:00
- (접수방법) 공단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접수
 - 공단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https://recruit.incruit.com/lead>
 - 지원서 접수 마감 시까지 수정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자가 집중되어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확인) 2차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예정

□ 채용분야별 세부일정

○ 별정직, 일반직

구분	(1차)서류접수	(2차)서류심사	(3차)면접시험
전형 내용	지원서 접수	• 경력 및 경험기술서(40) • 전문성(15) • 실행력(15) • 문제해결능력(15) • 책임의식(15)	• 고객중심(20) • 전문성(20) • 의사소통(15) • 실행력(15) • 문제해결능력(15) • 책임의식(15)
선발 인원	정상 접수자 전원 합격	(별정직) 5배수 (일반직) 5배수	(별정직) 1배수 (일반직) 1배수
주요 일정	(공고) 3.13.~3.28. 11:00 (발표) 수험번호 부여	(심사) 일정 비공개 (발표) 4. 4.	(시험) 4. 18. (발표) 4. 20.

○ 교사직,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구분	(1차)서류접수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전형 내용	지원서 정상 접수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 자원관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수리능력 • 대인관계능력 • 직업윤리	• 고객중심(20) • 전문성(20) • 의사소통(15) • 실행력(15) • 문제해결능력(15) • 책임의식(15)
선발 인원	정상 접수자 전원 합격	(교사직) 3배수 (취성패) 5배수	(교사직) 1배수 (취성패) 1배수
주요 일정	(공고) 3.13.~3.28. 11:00 (발표) 수험번호 부여	(심사) 4. 8. (발표) 4. 13.	(시험) 4. 25. (발표) 4. 27.

□ 과락 기준

○ 서류심사(별정직, 일반직)

취득 원점수*	과락여부
60점 이하	과락
60점 초과	과락 아님

*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

○ 필기시험(교사직,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 교사직(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

취득 원점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40점 미만	과락	
40점 이상 60점 미만	"취득원점수+보훈우대가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60점 이상인 경우 과락 아님	과락
60점 이상	과락 아님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분야)

취득 원점수	과락여부
60점 미만	과락
60점 이상	과락 아님

○ 면접시험

- 교사직(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

취득 원점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40점 미만	과락		
40점 이상 60점 이하	과락	"취득원점수+보훈우대가점"이 60점 이하이거나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부족(D)" 등급으 로 평가한 경우	과락
	과락 아님	"취득원점수+보훈우대가점"이 60점을 초과하고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부족(D)"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0점 초과	과락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부족(D)" 등급으로 평 가한 경우	
	과락 아님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부족(D)" 등급으로 평 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

- 별정직, 일반직,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분야)

취득 원점수*	과락여부	
60점 이하	과락	
60점 초과	과락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부족(D)"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과락 아님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부족(D)"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

□ 우대가점 적용기준

- 과락인 자를 제외하고 다음 기준으로 우대가점 적용

가점대상	가산점수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10%* * 각 관계법령에서 정한 가점 비율 적용
장애인	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 * 단, 중증장애인은 과목별 만점의 10%

- 1) 다만,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 적용여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의미함
- 3)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4)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 최저점의 동점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2차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제출서류

□ 자격요건 증빙서류

- 제출대상: 2차전형(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시기
 - 별정직, 일반직: 2023. 4. 4. ~ 4. 18.
 - 교사직,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2023. 4. 13. ~ 4. 21.

○ **제출방법:** 2차전형 합격 통보서에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서류발급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제출자료
별정직 5급 (정신보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일반직 5급 (건축)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에 한함)
	경력·연구경력 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비회원 중 해당자에 한함)
	석·박사 학위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비회원 중 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비회원 중 해당자에 한함)
일반직 5급 (회계·결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기재 필수)
교사직 (정보·통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교육훈련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담당 교육훈련 분야 기재 필수)
	연구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담당 교육훈련 분야 기재 필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실무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담당 업무 기재 필수)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해당 전문분야 학사 이상 학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재활상담사 합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에 한함)
	평생교육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상담심리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교원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공인노무사 최종합격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붙임 1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안내문

□ 편의 제공 대상

- 2023-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채용공고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자

□ 편의 제공 신청 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제공 항목에 신청사항 기재,
①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문 확인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신청 ③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④ 진단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입사지원서 작성 시 증빙서류(사본) 등록
○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사본)를 등록



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결과통보(문자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 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 유형과 정도 기재).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 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2]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편의지원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채용담당자(☎ 031-728-7255)

참조1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인	상지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시간 연장(1.5배)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인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1.5배)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답안지 대필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시각 장애인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연장(1.7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1.5배)	-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1.7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1.5배)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연장(1.5배)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화통역사 배치·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검토 후 안내	

※ 확대문제지: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선택형시험):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

※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참조2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발급일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유효 진단서 발급일
2023년 3월 28일	2021년 3월 29일 이후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각 명기)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

⇒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예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뇌병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기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기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 증상: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기타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단,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